##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07

발의연월일: 2021. 1. 15.

발 의 자:김용판·하영제·정희용

박대수 · 추경호 · 강대식

유경준 • 송언석 • 구자근

박덕흠 · 김예지 · 조명희

권성동 · 김희국 · 이주화

박성중 의원(16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있어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했거나,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 여 아무런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.

자격시험에서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 아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,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적인 제재와 결 부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함.

이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53조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##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3조의2(부정행위에 대한 제재) ①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 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53조의2(부정행위에 대한 제재)
	①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안전
	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
	람 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
	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
	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
	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.
	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
	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
	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
	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
	응시할 수 없다.